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2022. 10. 13.(목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2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: 2022년 10월 13일

(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·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

대두되고 있음.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에 대한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### 가. 조례 제정 이유

- 최근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·유포협박·저장·전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- 특히, 지난 2020년 텔레그램 ‘n번방 사건’<sup>1)</sup>에 이어 최근 ‘제2의 n번방 사건’으로 불리는 성착취범 ‘엘’ 사건<sup>2)</sup>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·지능화되고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음.
- 더욱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면서 지난 2018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5년 동안 학교 내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가 1,860건<sup>3)</sup>에 달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,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1) ‘n번방 사건’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,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, 성 착취 사건이다.

2) ‘엘’은 2019년 ‘n번방’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,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,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.

3) ※ 2018년 ~ 2022년 8월 초·중·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

(단위 : 건)

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 8월말 현재
218	464	427	461	290

자료 : 교육부

##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기관	법령명	공포일
1	서울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1.03.25
2	경기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0.11.12
3	경남	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1.11.04
4	경북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2.01.03
5	대구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	2021.12.30
6	세종	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2.04.20
7	울산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	2021.07.01
8	제주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	2022.01.12
9	충남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2.10.11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·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하고,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,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이와 관련해,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2 등에 의거,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과정을 평균 15차시 이상 편성·운영 중에 있음.

### 관내 학교 학년별 성교육 평균 시수

급별	학교수	학급수	학생수	성교육 실시 결과 현황(학년별 평균 시수)						
				1학년	2학년	3학년	4학년	5학년	6학년	계(평균)
초	259	4,213	83,795	15	15	15	15	15	15	15
중	129	1,703	42,428	16	16	16				16
고	85	1,970	39,877	16	15	16				15
특수	10	271	1,304	15	15	15	15	15	15	15
계	483	8,157	167,404	15	15	15	15	15	15	15

### 성교육 예방교육 실시 현황

급별	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				
	학생(명)			교직원(명)	
	교육대상인원(학급수)	교육실시인원(학급수)	급당교육시수	교육대상인원	교육실시인원
초	83,791 (259)	83,790 (259)	4	11,174	11,108
중	42,426 (129)	42,418 (129)	2	5,713	5,669
고	39,679 (85)	39,015 (85)	5	5,707	5,609
특수	1,304 (10)	1,302 (10)	4	902	894
계	167,200 (483)	166,525 (483)	4	23,496	23,280

※ 자료제공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

- 다만, 이러한 교육과정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간 의무이수 시간을 제도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해 상담을 비롯한 전문적 보호·지원 시설과의 연계,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충청북도, 충청북도경찰청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특히, 충청북도에서도 지난해 제정한 「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제8조4)에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어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 기반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4)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·군,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디지털 성범죄”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보호·지원(이하 “디지털 성범죄

예방 등” 이라 한다)을 위한 학생·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

2.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 사항

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예방 및 대응 교육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·대응 교육

2.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·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

3.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6조(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

2.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

3. 상담소, 보호시설,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과의 연계

4.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

5.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충청북도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 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5조의2(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)

-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(이하 “디지털

성범죄”라 한다)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(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)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(이하 “신분비공개수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

2.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 
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

**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**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
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<신설 2020. 6. 2.> [제목개정 2020. 6. 2.]

**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**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

2.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·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
## 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 약칭: 성폭력처벌법 )

[시행 2022. 7. 1.] [법률 제18465호, 2021. 9. 24., 타법개정]

###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## 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 : 성폭력방지법 )

[시행 2021. 7. 13.] [법률 제17895호, 2021. 1. 12., 일부개정]
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

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4. 5. 28.>

#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(안 제4조)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추진 (안 제6조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연 평균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임.